



Briefings of IMO Meeting

PPR 6 (18 -22 Februar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5-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Subject: News Flash of PPR 6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제6차 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9년 2월 18 일에서 22일까지 개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PPR 6차 주요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향후 MEPC에서 채택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0.50% 황함유량 규제 (의제 8, 9) ★

(1) 배경

- MEPC 70 차에서 MARPOL 부속서 VI 제 14.1.3 규칙에 따른 황함유량 규제(0.5%)를 2020년 1월 1일부로 이행하기로 결정함.
- MEPC 71 에서는 "MARPOL 부속서 VI 제 14.1.3 규칙의 일관된 이행"을 2019년 완료를 목표로 PPR 전문위원회의 New output 으로 승인함.

(2) 논의 및 결과

- MARPOL 부속서 6 장 개정
 -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MARPOL 부속서 VI 의 개정안에 동의하였고, 추가 논의 및 승인을 위해 MEPC 74 차에 제출될 예정임.
 - .1 (제 1 규칙) 적용
 - .2 (제 2 규칙) "연료유 황함유량", "저인화점연료", "MARPOL 수급 샘플", "사용중 연료" 및 "본선 연료"의 정의
 - .3 (제 14 규칙) 사용중 연료유의 샘플링 및 시험
 - 현존선의 경우, 샘플링 장치를 협약발효 12 개월 이후 첫 번째 정기 검사까지 장착 또는 지정하여야 함.
 - .4 (제 18 규칙 and 부록 6) 연료유 검증
 - MARPOL 수급 연료유 샘플 (Part 1) : 신뢰도 100%
 - 사용중 및 본선 연료유 샘플 (Part 2) : 신뢰도 95%*
- *e.g. : 적용 기준 (0.5%) / 시험 여유치 (0.53%) => 요건 충족 (0.5% < 시험결과 ≤ 0.53%)



Briefings of IMO Meeting

PPR 6 (18 -22 Februar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5-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5 (IAPP 증서 서식) 샘플링 장치에 대한 tick box 신규 추가
- 0.50% 연료유 황함유량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지침서
 - 주요 내용
 - .1 연료 및 기계 시스템 영향
 - .2 검증사항 및 통제방안 및 조치
 - .3 연료유 이용 불가 및 관련 보고 서식(FONAR, Fuel Oil Non-Availability Report)
 - .4 0.50% m/m 황함유량 규정을 만족하는 연료유에 대한 안전한 적용 가능성
 -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동 지침 초안을 마련함:
 - .1 부적합 연료유 사용 후 남은 잔량의 처분에 대한 4 가지 옵션(MEPC 74 차 추가 검토 예정)
 - .2 "MARPOL 사용 중 및 본선 연료유 샘플"과 "MARPOL-사용 중 및 본선 연료유 샘플" 중 어떤문구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MARPOL" 문구 삭제여부를 MEPC 74 차에 추가 논의 예정)
 - 선상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유량 검증을 위한 샘플링 지침서 (MEPC.1/Circ.864) 개정
 - 전문위원회는 마련된 지침서 초안을 MEPC 74 차 승인을 위해 제출할 예정
 - 적합한 연료유 공급에 관한 MSC-MEPC 회람문서 개정안
 - 전문위원회는 적합한 연료유 공급에 대한 MSC-MEPC 회람문서 개정안을 완성함.
 - MARPOL 부속서 6 장 관련 항만국 통제(PSC)를 위한 지침서 개정
 - 논의 시간 부족으로 제 14 규칙 (SOx) 관련된 지침만 개정하였음. 동 부속서의 기타 규정들(NOx, 소각 및 에너지 효율)에 관한 지침서 개정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코멘트 문서 제출을 요청함.



Briefings of IMO Meeting

PPR 6 (18 -22 Februar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5-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고유황 연료유 선박 적재 금지 조항의 비상기기 적용관련 통일해석 (MARPOL 부속서 6 장, 제 14.1 규칙, 2020 년 3 월 1 일 발효 예정)
 - 선상연료유 적재 금지 조항을 비상기기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MARPOL 부속서 14.1 규칙의 통일해석에 동의함
"부적합 연료유 적재 금지 규정에 대한 MARPOL 부속서 6 장 제 14.1 규칙은 비상기기의 연료유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2. 배기가스 정화장치(EGCS) 지침서 개정 (의제 11)

- 지침서 개정
 - 동 지침서 전체항목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차기 PPR 회의에서 추가 논의 및 완료하기로 합의함
- SECC (SOx Emission Compliance Certificate) 서식
 - 전문위원회는 SECC 서식상에 "Should"로 언급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IMO 의 그간의 관례에 따라 권고성향의 문구인 "should"를 "shall"대신 쓰기로 결정함
- EGCS 고장에 대한 지침서
 - 전문위원회는 추가논의(MEPC 74 차)를 위해 사무국에 회람문서 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3. 북극해역에서 선박의 연료유로서 중유 사용 및 적재 금지 (의제 12)

- 중유의 정의
 - 전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북극해에서의 중유의 정의를 합의하였고, 2020 년 황함유량 규제를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함에 동의하였음.
"중유(Heavy fuel oil)란 15°C에서 비중 900kg/m³을 초과하거나, 50°C에서 동점도 180 mm²/s 를 초과하는 기름임"
- 북극해 중유퇴출에 대한 영향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 초안
 - 전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5 단계 방법론에 합의함.
 (1 단계) 작업 범위 식별



Briefings of IMO Meeting

PPR 6 (18 -22 Februar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5-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2 단계) 정책 사안의 식별
- (3 단계) 정책 옵션
- (Step 4) 영향성 분석
- (Step 5) 정책 옵션 비교 및 합의된 옵션의 권고
- 아울러, 전문위원회는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북극지역 운항선박의 연료로서 중유의 사용 및 운송관련 위험경과 조치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에 동의함.

4. 화학제품의 안전성/위해성 평가 및 IBC Code 개정 (의제 3)

- 전문위원회는 ESPH 24 차 작업반회의 (2018 년 10 월)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신규 4 가지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MEPC.2/Circ.의 List 1 및 3 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함.
 - List 1(순수 또는 기술적으로 순수한 물질) : Alkylphenols (C10-C18, C12-rich)
 - List 3(오염성 및 위해성이 있는 혼합물) : SD-4820, SI-4126, SI-4154
- MEPC.2/Circ. 이행에 대한 명확화
 - 전문위원회는 MEPC.2/Circular 의 List 1 에 포함된 4 가지 파라핀계 제품의 운송요건을 포함한 MEPC.1/Circ. 를 마련하였고 승인을 위해 MEPC 74 차 제출할 예정임. 또한, 전문위원회는 상기 4 가지 파라핀계 화물의 개정된 명칭 및 운송요건은 IBC Code 17 장 개정안의 발효일 이후에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함.
 - *"n-Alkanes(C10-C20)", "Paraffin wax, highly-refined", "Paraffin wax, semi-refined" 및 "Hydrocarbon wax"
- 유류 및 바이오 연료 혼합물의 운송관련 2011 지침서(MEPC.1/Circ.761) 개정
 - MEPC 73 차에서 MEPC.2/Circ.24 의 annex 12 에 명시된 고에너지 연료유 운송 시 MARPOL 부속서 1 장의 요건을 적용해야 함에 합의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유류라고 언급된 문구를 MARPOL 부속서 1 장 화물로 변경하는데 동의함.



Briefings of IMO Meeting

PPR 6 (18 -22 Februar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5-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개정된 바이오연료 및 MARPOL 부속서 1 장 화물 혼합과 관련한 운송 지침인 MSC-MEPC 회람문서를 최종 승인을 위해 MEPC 74 차 및 MSC 101 차에 제출할 예정임.

5. 통일해석 (의제 16)

- 전문위원회는 아래 3 건의 통일해석들에 동의하였고 최종 승인을 위해 MEPC 에 전달될 예정임
- **MARPOL 부속서 6 장 제 13.2.2 규칙**(동일하지 않은 디젤엔진의 교체 또는 추가설치 적용일 관련 요건)
2021 년 1 월 1 일 발효예정인 질소산화물 배출 제한지역과 관련한 MARPOL 부속서 6 장 개정사항(북해 및 발틱해역)을 반영한 통일해석임.
- **MARPOL 부속서 6 장 제 16.9 규칙** (소각요건)
[16.9 규칙] 이 규칙 제 6.1 항의 요건에 따라 설치된 소각기의 연소실 가스 출구 온도는 작동 중 항상 감시되어야 한다. 연속 공급형의 소각기인 경우, 연소실 가스출구 온도가 850°C 미만일 경우 폐기물이 장치에 공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각기가 일괄 장착형인 경우, 그 장치는 시동 후 5 분 내에 연소실 가스 출구 온도가 600°C에 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후 850°C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통일해석]
.1 동 규칙의 "폐기물이 장치에 공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용어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연속공급형 소각기의 경우, 고체 폐기물은 연소실 연소가스 출구온도가 850°C 이하일 때 투입하여서는 안됨. 선박의 일반적인 운항 중 발생하는 슬러지는 동 규칙의 폐기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연소실 온도가 650°C 까지 예열되면 투입하여야 한다.



Briefings of IMO Meeting

PPR 6 (18 -22 Februar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5-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2 동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 장치는 시동 후 5 분 내에 연소실 가스 출구 온도가 600°C에 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일괄 장착형 소각기의 경우 고체 폐기물이 연소되고 있을 때 실제 연소실 구역의 온도가 기동 5 분 내에 600°C이상 올라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MARPOL 부속서 6장 제 13.5.3 규칙** (NOx Tier Mode 관련 기록요건)

[Reg. 13.5.3] Tier II 및 Tier III 로 증명되었거나 Tier II 로만 증명된 제 13.5.1 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용 디젤 엔진의 Tier 상태, 운전 상태는 이 규칙 제 6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통제해역에 들어갈 때 및 그 해역으로부터 나올 때, 혹은 배출통제해역 내에서 운전 상태가 변경될 때,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와 함께 주관청이 규정한 로그북에 기록하여야 한다.

[통일해석]

동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1 Tier III (동규칙 5.1 항)이 적용되는 엔진의 의미는 배출제한지역(ECA)적용 시점 이후 추가 또는 교체되는 엔진을 포함.

.2 "Certified Tier II only"의미는 ECA 적용시점 이후에 선박에 설치되는 Tier II 엔진을 의미함.

.3 ECA 적용시점 이전에 선박에 Tier II 규정에 따라 설치된 Tier II 엔진은 "Tier II only"에 해당되지 않음. 결의서 MEPC.230(65)에 따라 설치된 Tier II 엔진도 "Tier II only" 해당하지 않음.

.4 만약 ECA 적용시점 이전에 설치된 엔진이 제 13.2.1 규칙에 따라 주요개조가 된다면 이러한 엔진은 Tier III 엔진으로 보고 기록요건이 적용됨

.5 제 13.5.4 규칙에 따른 면제를 바탕으로 ECA 내 운전하는 Tier II 엔진은 기록이 요구됨



Briefings of IMO Meeting

PPR 6 (18 -22 Februar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5-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6. 국제운항선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역에 미치는 영향 (의제 7)

○ 전문위원회는 통신작업반에서 식별된 41 가지 통제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동 의제와 관련한 계획한 작업*이 완료되었음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가 업무 지시를 내려줄 것을 MEPC 에 요청함.

- 대체 연료 (8)
- 연료 처리 (2)
- 배기가스 처리 (9)
- 엔진 및 추진 시스템 설계 (6)
- 선박 설계 (2)
- 운항 조치 (6)
- 법적 조치 (6)
- 기타 수단 (2)

*1. 국제해운에서의 블랙카본의 정의 개발(MEPC 68)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보고 프로토콜 완료 및 가장 적절한 측정방법 식별 (PPR 5)

3. 적절한 통제조치에 대한 조사 및 검토 (PPR 6)

7. AFS 협약 개정 (Agenda 6)

○ 전문위원회는 Cybutryne 사용금지를 목적으로 AFS 협약 부속서 1 개정초안을 승인하였고, 승인을 위해 MEPC 74 차에 제출될 예정임.

- 적용 : 2021 년 10 월 3 일부터 선박에서는 Cybutryne 을 사용할 수 없으며, 2026 년 10 월 3 일부터는 Cybutryne 침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후속 개정 필요사항
 1. 선박 방오 시스템 샘플링 지침, 검사 및 검증 절차 지침, 점검 지침 (MEPC.Res.104(49), MEPC.Res.195(61) and MEPC.Res.208(62))
 2. 런던 협약 관련 지침서 및 선박재활용(홍콩) 협약에 따른 유해물질목록



Briefings of IMO Meeting

PPR 6 (18 -22 February 2019)

BRIEFING STATUS

Flash

No. IMO-0005-2019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8. IBTS 지침서, IOPP 증서 및 기름기록부 개정 검토 (의제 13)

- 전문위원회는 IBTS 지침서의 일부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구두상으로 증발 금지 및 청정드레인(Clean Drain) 배출에 대한 15PPM 알람 감시 장치는 필요 없음에 동의함.
- 또한, 전문위원회는 통합 IBTS 지침서 개발에 동의하였고 추가 검토를 위해 통신작업반을 개설하기로 함.

9. 오수처리장치 관련 지침서 개정 (Agenda 14)

- 전문위원회는 오수처리장치의 형식승인 기준 2012 지침서의 개정안 및 MAPROL 부속서 4 장 협약개정안(오수기록부 및 오수관리계획서 도입)에 대해 검토함.
- 하지만 MARPOL 부속서 4 장 협약의 개정은 동 의제 작업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MEPC 74 차에서 작업범위가 개정될 경우 차기 PPR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P.I.C:

Park Yun-chan /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26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vention@krs.co.kr


**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